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제246회 임시회

검 토 보 고 서

2021. 1. 27.(수)

검 토 안 건	발 의
서울특별시 마포구 어린이·청소년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의 원



복지도시위원회

(전문위원 조광현)

“서울특별시 마포구 어린이·청소년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1. 회부경위

- 제출자 : 최은하 의원 외 7인
- 제출일 : 2021. 11. 21.
- 회부일 : 2020. 11. 21. (의안번호 : 21-15)

2. 제출이유

어린이와 청소년들이 의회 활동을 통해 권리주체로서의 능력과 자질을 함양하고, 교육·복지·안전 등 스스로와 관련된 분야의 정책과 현안사항을 함께 논의하고 제안함으로써 어린이·청소년들의 참여 권리를 보장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가. 목적 및 정의 (안 제1조 ~ 안 제2조)
- 나. 의원정수 및 선출방법 (안 제4조 ~ 안 제5조)
- 다. 의장단 구성(안 제8조)
- 라. 위원회에 관한 사항(안 제9조 ~ 안 제11조)
- 마. 의원에 대한 지원 등(안 제16조)
- 바. 제안된 의견 구정에 반영(안 제17조)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청소년기본법 제2조(기본이념), 제5조의2(청소년의 자치권 확대), 제8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임)
- 청소년활동 진흥법 제5조(청소년활동의 지원)
-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18조(이주배경청소년에 대한 지원)

나. 예산조치 :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첨부

다. 기타사항

- 1) 입법예고 : 2021. 1. 20. ~ 2021. 1. 24.
- 2) 관계법령 : 불임

5. 검토의견

○ 제정 취지

- 본 제정조례안은 청소년의 자치권 확대를 위해 청소년 관련 정책과 문제 등을 청소년들이 스스로 토론하고 그 논의된 사항을 구의원이 청취하여 정책에 반영하여 줌으로써 청소년들이 의회체험 및 의회정치에 대한 건전한 토론문화를 통해 민주사회 시민으로서의 역량을 키우고 자유롭게 자신의 의견을 표현할 권리를 보장하고자 제출된 안건임.

○ 주요내용

- 안 제1조와 안 제2조는 본 조례의 목적과 조례에서 사용하는 ‘어린이·청소년의회’, ‘어린이·청소년’ 등을 정의하였고,

특히 어린이는 관내에 거주하는 만13세 미만의 아동이거나 관내 초등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으로 하고, 청소년은 만13세 이상 만18세 미만의 청소년이거나 관내 중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으로 규정하고 있음.

{표1} 관련법상 아동·청소년 연령기준

관 련 법	연령기준
영유아보육법	(영유아) 6세 미만
아동복지법	(아동) 18세 미만
청소년기본법	(청소년) 9세이상, 24세 이하
청소년보호법	(청소년) 19세 미만
소년법	(소년) 19세 미만
민 법	(미성년자) 18세 이하

- 안 제3조에서 안 제6조까지는 어린이·청소년 의회의 구성과 기능, 의회 의원 선정에 관한 사항, 임기 및 사퇴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규정하였음. 어린이·청소년의회의 의원수는 각각 50명 이내로 하고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 성별비율을 고려하였으며, 학교대표와 지역대표의 의원수도 1/2로 하여 학교대표와 지역대표간의 형평성도 유지되도록 정함.
- 안 제7조에서 안 제14조까지는 의장단 및 상임위원회의 구성, 회의 방법에 대한 사항으로 의장단은 의장 1명과 부의장 2명으로 과반수 출석, 과반수 찬성으로 정하고, 위원회는 상임위원회와 특별위원회를 두고 상임위원회는 인권위원회, 안전위원회, 교육·복지위원회를 둘 수 있고

각 상임위원회는 17명 이내로 구성하며 의원은 1개의 상임위원회에 의원이 됨.

- 안 제15조부터 안 제18조까지는 어린이·청소년의회에 대한 지원에 관한 사항으로, 세부적으로는 의원증, 배지, 견학활동 등을 지원토록 하고, 어린이·청소년 의회에서 제안된 의견을 구정에 적극 반영하도록 규정하였음.

- 조례 제정현황을 살펴보면 2021년 1월 현재 전국적으로 68개의 지자체가 관련 조례를 제정하였으며, 서울시 및 자치구 중에서는 11곳에서 조례를 제정·시행하고 있음.

{표 2} 서울시 자치구 조례제정현황

연번	자치구	조례명	제정일	성격
1	도봉	어린이, 청소년 의회 구성 및 운영	2018.4.5.	상시
2	성북	어린이, 청소년 의회 구성 및 운영	2012.12.31.	상시
3	양천	어린이, 청소년 의회 운영	2019.3.21.	일회성
4	강동	청소년의회 구성 및 운영	2016.9.28.	상시
5	동작	청소년의회 구성 및 운영	2017.11.9.	상시
6	동대문	어린이, 청소년 의회 운영	2019.7.11.	일회성
7	서대문	어린이, 청소년 의회 구성 및 운영	2020.10.14	상시
8	영등포	청소년 의회교실 운영	2018.3.29.	체험
9	마포	청소년 의회체험 지원	2019.3.28.	체험
10	종로	청소년의회 체험활동 운영	2019.3.15.	체험
11	서울시	서울특별시의회 청소년의회교실 운영	2017.9.21.	체험

※ 우리구의 경우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청소년 의회체험 지원 조례」가 있으나 이 조례는 청소년들이 단순히 일회성으로 의회를 체험하는 조례임.

○ 검토의견

- 유럽에서는 90년대 말부터 이미 **청소년의 정치참여가 청소년 정책과 교육적 측면에서 중요한 주제나 수단으로 논의**되었고, 우리나라에서도 청소년의 정치교육과 청소년 정책의 측면에서 다양한 시도들이 이뤄지고 있음. 국회의 “어린이 국회”나 “청소년 국회”, 서울시의 “어린이 의회”, NGO 성격의 “대한민국 청소년의회¹⁾” 등이 그런 시도 중에 하나라고 볼 수 있으나, 이러한 시도들은 약간의 차이가 있지만 “1일 의정 체험” 수준을 벗어나지 못하는 **한계가 있음**.
- 그러나 점차적으로 청소년들이 의회에서 목소리를 내고 행정관청과 교육청의 정책을 바꾸기도 하는 사례가 생겨나고 있음.²⁾
- 우리구에서도 아동친화도시³⁾ 조성, 교육혁신지구 사업등과 연계하여, 본 조례의 제정으로 **어린이·청소년의회의 활동이 더욱 활성화 되는 계기가 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됨**.

첨부 1.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2. 관계법령

1) “**대한민국청소년의회**”는 유엔 아동 권리협약(12조)과 대한민국청소년헌장 (문화관광부, 1998년 제정) 등의 청소년 사회참여 근거를 바탕으로 2003년 출범하여 청소년들이 자신들의 목소리를 사회에 당당히 드러내고 청소년의 의견이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다양한 활동들을 하고 있는 비영리 민간단체

2)한겨레(2019.5.27.) “**청소년의회가 학교·사회 바꾼다**”

- 가평학생의회가 가평군의회에 제안한 ‘**보행로 안전 개선 방안**’이 채택되어 주요 통학로 바닥에 로고찍터 설치
- 광명학생교육의회의 ‘**학교 시설 설치 및 준공 때 학생 의견 수렴**’ 제안이 경기도 교육청의 정책으로 채택 등

3)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의 제1원칙은 아동의 참여**. 지방정부가 아동에게 영향을 미치는 사안을 결정할 때 아동의 의견을 청취하고 고려해야 한다는 원칙으로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들은 아동 참여를 보장하기 위해 아동참여기구를 운영하고 있음.

[첨부 1]

서울특별시 마포구 어린이·청소년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비용발생 요인 및 관련 조문

제16조(의원에 대한 지원 등) 구청장은 각 의회의 활성화를 위해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와 같이 의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1. 의원들이 의회운영방식·안전제안·안건이 주는 영향 등을 이해할 수 있도록 충분한 정보 제공 및 교육
2. 의원 신분증, 배지 등 어린이·청소년 의회의 운영을 위해 필요한 사항
3. 국회, 선진지역 방문 및 견학
4. 그 밖에 구청장 또는 구의장이 어린이·청소년의회 활성화를 위해 정하는 사항

제18조(수당) 구청장은 본회의·상임위·특별위원회 회의에 참석한 의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등을 지급한다.

2. 미첨부 근거 규정

- 「서울특별시 마포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12조제2항제1호에 해당
- 1.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1억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3억원 미만인 경우

3. 미첨부 사유

⇒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1억원 미만에 해당

4. 작성자

작성자 이름	복지교육국 아동청년과 전선영
연 락 처	02-3153-8966

[첨부 2] 관계법령

청소년 기본법

제2조(기본이념) ① 이 법은 청소년이 사회구성원으로서 정당한 대우와 권익을 보장받음과 아울러 스스로 생각하고 자유롭게 활동할 수 있도록 하며 보다 나은 삶을 누리고 유해한 환경으로부터 보호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국가와 사회가 필요로 하는 건전한 민주시민으로 자랄 수 있도록 하는 것을 기본이념으로 한다.

② 제1항의 기본이념을 구현하기 위한 장기적·종합적 청소년정책을 추진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그 추진 방향으로 한다. <개정 2015. 2. 3.>

1. 청소년의 참여 보장
2. 창의성과 자율성을 바탕으로 한 청소년의 능동적 삶의 실현
3. 청소년의 성장 여건과 사회 환경의 개선
4. 민주·복지·통일조국에 대비하는 청소년의 자질 향상

제5조(청소년의 권리와 책임) ① 청소년의 기본적 인권은 청소년활동·청소년복지·청소년보호 등 청소년육성의 모든 영역에서 존중되어야 한다.

② 청소년은 인종·종교·성별·나이·학력·신체조건 등에 따른 어떠한 종류의 차별도 받지 아니한다.

③ 청소년은 외부적 영향에 구애받지 아니하면서 자기 의사를 자유롭게 밝히고 스스로 결정할 권리를 가진다.

④ 청소년은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자기발전을 추구하고 정신적·신체적 건강을 해치거나 해칠 우려가 있는 모든 형태의 환경으로부터 보호받을 권리를 가진다.

⑤ 청소년은 자신의 능력을 개발하고 건전한 가치관을 확립하며 가정·사회 및 국가의 구성원으로서의 책임을 다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의2(청소년의 자치권 확대) ① 청소년은 사회의 정당한 구성원으로서 본인과 관련된 의사결정에 참여할 권리를 가진다.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청소년이 원활하게 관련 정보에 접근하고 그 의사를 밝힐 수 있도록 청소년 관련 정책에 대한 자문·심의 등의 절차에 청소년을 참여시키거나 그 의견을 수렴하여야 하며, 청소년 관련 정책의 심의·협의·조정 등을 위한 위원회·협의회 등에 청소년을 포함하여 구성·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7. 12. 12.>

③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청소년과 관련된 정책 수립 절차에 청소년의 참여 또는 의견 수렴을 보장하는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④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청소년 관련 정책의 수립과 시행과정에 청소년의 의견을 수렴하고 참여를 촉진하기 위하여 청소년으로 구성되는 청소년참여위원회를 운영하여야 한다.

⑤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4항에 따른 청소년참여위원회에서 제안된 내용이 청소년 관련 정책의 수립 및 시행과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신설 2017. 12. 12.>

⑥ 제4항에 따른 청소년참여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8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임)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청소년육성에 필요한 법적·제도적 장치를 마련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근로 청소년을 특별히 보호하고 근로가 청소년의 균형 있는 성장과 발전에 도움이 되도록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③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청소년에 대한 가정과 사회의 책임 수행에 필요한 여건을 조성하여야 한다.

④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이 법에 따른 업무 수행에 필요한 재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한 시책을 수립·실시하여야 한다.

청소년활동 진흥법 (약칭: 청소년활동법)

제5조(청소년활동의 지원) ① 청소년은 다양한 청소년활동에 주체적이고 자발적으로 참여하여 자신의 꿈과 희망을 실현할 충분한 기회와 지원을 받아야 한다.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청소년활동을 활성화하는 데 필요한 청소년활동 시설, 청소년활동 프로그램, 청소년지도자 등을 위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③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개인·법인 또는 단체가 청소년활동을 지원하려는 경우에는 그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청소년복지 지원법 (약칭: 청소년복지법)

제18조(이주배경청소년에 대한 지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청소년의 사회 적응 및 학습능력 향상을 위하여 상담 및 교육 등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1. 「다문화가족지원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다문화가족의 청소년
2. 그 밖에 국내로 이주하여 사회 적응 및 학업 수행에 어려움을 겪는 청소년